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3.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10호로 2021년 2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의 고지에 관한사항을 준수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령에 정의된 용어에 대해 일부 삭제(안 제2조)
- 나.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
식별장치만 장착(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2021. 2. 4. ~ 2. 7./ 3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제2호의 “등록대상동물”을 「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 후 제6호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하였음.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의 용어정의가 자치법규에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도록 한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른 것임. 자치법규에 실익이 없는 규정을 두게 되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고,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
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임.

- 안 제7조제2항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던
것이 무선식별장치만 장착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임.
-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이 인정됨.

참 고 자 료

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가. 포유류
 - 나. 조류
 -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